

### 3단계공공근로자사업에서 1,2단계참여자 배제반대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

#### 1. 심사결과

가. 청원인 성명 : 박종인

주소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9-1

나. 소개의원 : 임해규 의원

다. 접수일자 : 1998. 12. 8

라. 회부일자 : 1998. 12. 9

마. 상정 및 의결일자 : 1998. 12. 21

○ 부천시의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제6차(98. 12. 21)회의 상정의결

## 2. 청원요지

-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1, 2단계 참여자 배제에 대한 반대
- 1단계 공공근로사업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3,000원씩 삭감했는데 향후 그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임해규 의원)

-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1, 2단계 참여자를 배제한다는 경기도 방침은 초점에서 어긋나 있음.
- 1, 2단계에 참여했던 공공근로사업자가 구직의사가 없었다기보다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
-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선별기준은 가장 실업자를 우선하는 것이어야 함
- 1단계 공공근로사업자의 임금은 23,000~33,000원(식대제외)이었는데, 2단계 일률적으로 3,000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이는 개별 근로계약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선발기준,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의 역할, 선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방법, 실업대체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기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서 선발과정에서 동일조건으로 경합이 있을 시에도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li> </ul>	<p>○ 네, 홍보를 철저히 하고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5. 심시결과

-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청원심사 의견서 1부(별첨)

## 청원심사의견서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98. 12. 21

안건명	3단계공공근로사업에서 1, 2단계 참여자배제반대에관한청원
소개의원	임해규

□ 청원요지

-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1, 2단계 참여자 배제에 대한 반대
- 2단계 공공근로사업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3,000원씩 삭감했는데, 향후 그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심사의견

- 향후 추진예정인 3단계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4단계, 5단계 등의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선발의 핵심기준을 신규 참가자를 우선으로 하되 실업에 처한 가장실업자로 하고 부녀자의 참가자격은 가계를 책임지고 가장 역할을 하는 부녀자를 참가자로 선발하는 등 선발기준을 엄격히 시행할 것이며, 공공근로 1, 2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이 구직의사가 없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직시하여 경기도 지침 등에 1, 2단계 동시 참여자를 후순위 참가자로 한 것은 변경되어야 하고, 우리 시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공공근로사업의 참가자 선발시 청원의 취지를 반드시 반영하여 공공근로사업 연속 참여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임금을 일방적, 일률적으로 3,000원씩 삭감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 참가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홀히 대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람.

1998. 12. 21

부천시의회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